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의결된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노원구의회 의장 손 영 준 (인)



2026년 9월 17일

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규칙 제37호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정책지원팀”을 “운영지원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
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, 같은
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외부행사지원(의장 및 의원 의전)

17. 의원 비교시찰 지원

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사진촬영·편집”을 “사진 및 영상 촬영·편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도서구입 등”을 “도서구입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의회 표창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

9.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 중계에 관한 사항 등

제6조의 제목 “(정책지원팀)”을 “(운영지원팀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지원팀”을 “운영지원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사항 등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
4.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

8.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등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하부조직)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, 의사팀, 홍보팀, <u>정책지원팀</u> 을 둔다.	제2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지원팀</u> ----- 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의정팀) ① <u>의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</u>	제3조(의정팀) <삭 제>
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</u>	12. <u>외부행사지원(의장 및 의원 의전)</u>
13. ~ 16. (생 략)	13. ~ 1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7. <u>의원 비교시찰 지원</u>
17. (생 략)	18. (현행 제17호와 같음)
제4조(의사팀) ① <u>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</u>	제4조(의사팀) <삭 제>
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15. ~ 19. (생 략)	14. ~ 18. (현행 제15호부터 제 19호까지와 같음)

제5조(홍보팀) ①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홍보자료 관리(사진촬영·편집 등)

6. (생략)

7. 홍보책자·의정백서 발간, 도서구입 등

<신설>

<신설>

제6조(정책지원팀) ①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외부행사지원(의장 및 의원 의전)

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5. (생략)

제5조(홍보팀) <삭제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사진 및 영상 촬영·편집 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 도서구입

8. 의회 표창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

9.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 중계에 관한 사항 등

제6조(운영지원팀) <삭제>

운영지원팀-----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
7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4.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u>6. 의원 비교시찰 지원</u> <u>7. 정책지원관의 평가 및 배치</u> <u>에 관한 사항 등</u> <u><신 설></u>	<u><삭 제></u> <u>5. -----</u> -- <u>사항</u> <u>8.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</u> <u>사항 등</u>
--	---